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10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9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 8. 10. 권영희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다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20년 9월 9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‘2년’에서 ‘1년’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원 및 예산재정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.
-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함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상 예산정책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위원 임기를 ‘2년’에서 ‘1년’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 의원과 예산재정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해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관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 위원회 위원의 임기 변경(안 제4조)

-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)와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)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과 관련해 의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음.
- 현행 조례에 규정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은 총 6가지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뿐 아니라 지방재정 일반을 포함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의회 입법과 정책개발 및 시정감독 전반에 걸쳐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(<표 1> 참조).

〈표 1〉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

1. 의원이 요청하는 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에 관한 사항	4.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·분석에 관한 사항
2.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	5. 지방재정 관련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	6. 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-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이 의원 15인,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2년에서 1년으로 임기를 축소하면,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4년 간 최대 두 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외부 전문가 또한 교체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의원들이 더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·재정 관련 토론과 논의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- 또한 재정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정책위원회 위원 임기가 1년이라는 점도 위원회 간 활동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임(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4조).
- 이처럼 재정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포괄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임기 축소를 통해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교류·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의원 간 및 정책위원회와의 형평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위원회 임기 축소를 통해 재정 중심으로 시 및 교육청의 예산·결산과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해 지방재정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 활동에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토록 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기회 제공에 있어 형평성을 보장함으로써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의원 13명,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권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0일
발 의 자 : 권영희, 이호대, 김화숙, 김제리,
김달호, 임종국, 김경우, 채인묵,
최 선, 강동길, 장인홍, 장상기,
유 용, 송명화, 최정순 의원
(15명)

1. 제안이유

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'2년'에서 '1년'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원 및 예산재정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함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
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
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, 그위원의 임기는
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<u>위원의 꺾위로 인하여 위촉된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 <u>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